

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

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(☎ 044-201-4487)

▶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 하는 경우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됩니다.

- 국감, 언론 등에서 특별공급 주택을 전매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.

☞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

<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>

- ▶ 추진배경 :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분양 주택 전매 및 다운계약서 등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 발생에 따른 대책
- ▶ 주요내용
 - 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(70%~100%→50%~70%)
- ▶ 시행일 : 2014.1.1.